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○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(법률 제21447호, 2026.3.5. 공포, 7.1 시행)됨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“통합특별시”를 추가하고,

○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국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함에 있어 현행 규정상 일부 누락되고 있는 약제비용 본인일부부담금까지 포괄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2항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시·군·특별자치도”를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”으로, “특별시·광역시·도”를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”로 한다.

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별표 2 제1호다목”을 “별표 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취학비율의 조정) ① (생략)	제35조(취학비율의 조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<u>특별시·광역시·시·군·특별자치도</u> 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<u>특별시·광역시·도</u>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(이하 이 장에서 “시·도교육감”이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</u> ----- ----- <u>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</u> ----- ----- -----.
제64조의2(약제비용의 부담) ① 국가는 법 제42조제1항·제2항·제5항·제7항 또는 법 제42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료를 받고 해당 의사 또는 치과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「약사법」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제비용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	제64조의2(약제비용의 부담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표 2</u> -----

<u>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비용을</u>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부담하거나 지급한다. 1. ~ 3. (생략) ②·③ (생략)	----- ----- 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(취학)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(의료)	
연 락 처	(044) 202 - 5658 (044) 202 - 5644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○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(법률 제21447호, 2026.3.5. 공포, 7.1 시행)됨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“통합특별시”를 추가하고,

○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이 발생한 경우,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 수급권자로서의 권리 회복과 보훈의료국비지원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2항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”을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”으로,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”를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”로 한다.

제64조제1항 중 “약제비용”을 “약제비용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취학비율의 조정) ① (생략)	제32조(취학비율의 조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</u> 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</u> 또는 <u>특별자치도의 교육감</u> (이하 이 장에서 “시·도교육감”이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</u> ----- ----- <u>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</u> ----- ----- -----.
제64조(약제비용의 부담) ① 국가는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51조제1항·제2항·제5항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「약사법」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<u>약제비용</u> 의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.	제64조(약제비용의 부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약제비용</u> 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)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(취학)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(의료)	
연 락 처	(044) 202 - 5658 (044) 202 - 5644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
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○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(법률 제21447호, 2026.3.5. 공포, 7.1 시행)됨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“통합특별시”를 추가하고,

○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이 발생한 경우,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 수급권자로서의 권리 회복과 보훈의료국비지원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별”을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별”로,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”를 “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”로 한다.

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약제비용”을 “약제비용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특수임무부상자: 약제비용 전액. 다만, 제35조의2 본문에 따른 본인 부담분은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취학비율의 조정) ① (생략)	제12조(취학비율의 조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별</u> 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<u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</u> 또는 <u>특별자치도의 교육감</u> (이하 “시·도 교육감”이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별</u> ----- ----- <u>특별시·통합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</u> ----- ----- -----.
제37조(약제비용의 부담) ①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법 제33조제1항·제2항·제5항 또는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「약사법」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<u>약제비용</u> 을 국가에서 부담한다.	제37조(약제비용의 부담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약제비용</u> 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-.

1. 특수임무부상자: 약제비용 전액 2. (생략) ② (생략)	1. 특수임무부상자: 약제비용 전액. 다만, 제35조의2 본문에 따른 본인 부담분은 제외한다.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(취학)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(의료)	
연 락 처	(044) 202 - 5658 (044) 202 - 5644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5·18민주유공자예우
및
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이 발생한 경우,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 수급권자로서의 권리 회복과 보훈의료 국비 지원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약제비용”을 “약제비용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: 약제비용의 전액. 다만, 제33조의2 본문에 따른 본인 부담분은 제외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5조(약제비용의 부담) ①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34조제1항·제2항·제5항 또는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「약사법」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<u>약제비용</u> 을 국가가 부담한다.	제35조(약제비용의 부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약제비용</u> (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-
1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: <u>약제비용의 전액</u>	1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: <u>약제비용의 전액. 다만, 제33조의2 본문에 따른 본인 부담분은 제외한다.</u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644